

1.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유기징역형은 1개월 이상 30년 까지이며, 가중 시 50년까지 가능하다.
4.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벌금형 시효는 5년이며,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인하여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진다.
6.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7.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8. 500만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를 대신하여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받는다.
9.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10.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11. 검사는 출석요구기간등을 제외한 피고인의 사회봉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2.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하는 경우 벌금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기간을 산정하되, 산정한 사회봉사기간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13. 사회봉사는 원칙적으로 1일 9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13시간까지 집행할 수있다.
14. 사회봉사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 범위에서 한번 그 기간 연장 가능.
15.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 신청할 수 있다.

16.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7. 법원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장에게 보내야 한다.
18.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호관찰 대상자 유치하려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20. 이때 유치된 기간은 구인한 날부터 **30일**로 하고 **2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유치기간 연장 가능하다.
21. 보호관찰 법률상 기본 준수사항 - 주거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22.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는 주거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23. 사회봉사 시간: 형법 - **500시간**, 소년법 **200시간**
24. 수강명령 시간: 형법 - **200시간**, 소년법 **100시간**
25.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6.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7. 갇혀 보호 대상자 숙식제공 기간 연장 관련 **6월** 범위 내에서 **3회** 한하여 기간 연장 가능
28. 검사 치료감호 집행 정지 사유(CAN) - 피치료감호자 **70세** 이상, **70세**이상 부모봉양, 임신 **6개월** 이후, 잉태후 **60일** 미만
29. 치료감호에서 보호관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0.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 되었을 때나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 시설 외에서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31.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 한다.
32. 치료감호 수용기간: 정신성적장애자로서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피**1**치료감호자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마약중독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3.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 확정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34.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집행이 시작된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배,직,형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35. 살인죄를 범한자의 치료감호기간 연장신청은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 범위에서 법원이 연장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검사의 청구는 치료감호기간 또는 치료감호가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6 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36.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청구를 상소심(2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37.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서 부분을 피부착명령 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38.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을 산입한다.
39.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0.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 부착할 수 없다.
41. 전자장치 피부착자 or 치료명령 받은 자는 주거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 또는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2.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만 2배로 한다.
43. 검사는 성폭력범죄나 강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후 또는 집행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4. 여러개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 선고시 -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 1/2까지 가중 but 각 죄의 부착기간 상한 합산기간 초과x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함.
45.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검사가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2년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46.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부착명령이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기각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개월 경과후 다시 신청 가능
47. 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경우 이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그 집행이 종료된다.
48. 검사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9 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9.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치료명령이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기각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6개월 경과후 다시 신청 가능.

50.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51.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52.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2개월 전에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53. [아동복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5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함 단 19세 1월 1일 제외
55.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만 19세 미만인 사람 단 만 19세 1월 1일 제외
56.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
57. 촉법소년: 10세이상~14미만 법에 저촉 /  
우범소년: 10세이상~19세 미만 법에 저촉 '우려'
58. 보호처분 1호: 보호자등 위탁/ 6호: 시설등 위탁/  
7호:병원등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59. 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12세이상) - 100h초과x
60. 보호처분 3호: 사회봉사(14세이상) - 200h초과x
61. 보호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1년) - 연장x / 5호: 장기보호관찰(2년) -1년 연장 o
62. 보호처분 4,5호 처분시
  - a. 3개월 이내 기간 정하여 대안교육 또는 소년 교육관련 단체,시설에서 상담,교육 받을 것 명할 수 있음
  - b. 1년 이내 기간 정하여 야간 외출 금지등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 가능
63. 보호처분 8호: 1개월 소년원 송치/ 9호: 단기(6개월)송치/  
10호: 장기(2년)송치 - 연장불가
64. 보호처분시 1,2,3,4호 / 1,2,3,5호/ 4,6호/ 5,6호/ 5,8호 병합처분 가능
65. 소년법상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하고 집행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다.
66.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무기징역 처할시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67. 보호처분이 계속중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경우 - 형을 먼저 집행함
68.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 유기형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형의 범위에서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69. 소년 가석방 가능 기간: 무기형 - 5년/ 유기 15년 - 3년/ 부정기형 - 단기 1/3
70.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 선고할 수 없음
71. 검사가 소년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72. 조선시대 도형의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5종으로 구분하였고 장형이 병과되었다.

73. 장형은 갑오개혁(1895)때 폐지되었고 태형은 일제강점기(1920)년대에 폐지되었다.
74. 정문 근무자는 취침시간부터 기상시간까지 당직간부의 허가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
75. 당직간부는 교대근무 각 부별로 2명 이상 편성하며, 이경우 정당직간부 1명과 부당직간부 1명으로 한다.
76.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그 수용자에게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77. 예납 사유가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장,지,소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78. 비용납부 통지를 받은 수용자는 그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장,지,소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79.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에게 월 1회까지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0.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에게 월 2회이내에서 경기or 오락회 개최할 수 있다.
81. 실효
- 3년이상 징역: 10년/ 3년 이하 징역: 5년/ 벌금: 2년
  - 구류와 과료: 형 집행 종료or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실효됨
  -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 형 받음 없이 7년 경과시 본인 또는 검사 신청으로 법원이 그 재판의 실효선고 가능
82. 신입자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연속등 부등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3. 소장은 신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84. 소장은 신입자를 신입자 거실에서 3일간 수용한다. 19세 미만이거나 필요한 경우 30일 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경우 작업은 시킬 수 없다.
85.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86.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 직전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87.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88.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 열량은 1명당 1일 2,5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89.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1명당 1일 390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90. 소장은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 되돌려 보내야 하는 경우 - 보낸 사람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분명한 경우에 그 뜻을 공고, 공고 후 6개월 지나도 찾는 사람 없으면 국고에 귀속한다.
91.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 하여야 한다.

92. 접견 허용 횟수 - 개방 수형자,미결 수용자: 매일 1회/ 완화 수형자: 1달 6회/  
일반수형자: 1달 5회/ 사형 확정자,중경비 수형자 - 1달 4회/ 수형자: 1달4회?
93. 전화 허용 횟수 - 개방: 5회/ 완화: 3회/ 일반,중경비: 2회/ 사형: 3회(허가)
94. 신문: 월3종/ 도서,잡지: 월 10권/ 방송시간: 6시간
95. 소장은 여성 수용자가 출산한 유아 교정시설 양육 신청시 1.교정시설에 문제, 2. 애새끼한테 문제, 3. 여성수용자한테 문제가 없을 시 18개월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96. 계호상 독거수용자, 19세 미만 수용자, 65세 이상 수용자는 6개월에 1회이상 건강검진 하여야 한다./ 임신수용자의 검간검진은 주기적으로 하여야함(유산포함)
97. 형기 3년 이상, 범죄횟수 2회 이하에 개방,완화 처우급 수형자 중간처우시
- 교정시설 내부 개방시설: 형기 종료or가석방 예정일까지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 교정시설 외부 개방시설: 형기 종료or가석방 예정일까지 9개월 미만
98. 18세이상 65세 미만, 건강문제x, 가족등과 연락하고 있을 시 외부 기업체 통근 사유
- 내부 통근: 개방,완화,일반 - 집행할 형기 10년미만 or 형기 기산일부터 10년 이상
  - 외부 통근: 개방,완화 - 집행할 형기 7년미만 and 가석방에 제한 없을 것
99. 독학,방통대,전문대 자격: 집행할 형기 2년이상, 형기 1/3(무기or 21년 이상은 7년)넘을 것,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 학력 인정될 것
100. 소장은 일반 귀휴 자격 [1. 개방,완화(필요시 일반) 2. 6개월 이상 복역 수형자 3. 형기 1/3 이상(무기 or 21년 이상은 7년) 넘을 것] 을 갖춘 자에게 일반귀휴사유 발생시 1년 중 20일 내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01. 특별 귀휴: [1. 가족 사망 2.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3. 직계비속의 혼례의 경우]에  
매 특별귀휴 마다 5일 이내로 가능하고 일반 귀휴와 마찬가지로 귀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102. 소장은 특별 귀휴 사유중 가족의 사망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의 경우이고 위급한 경우에 귀휴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귀휴담당부서(사회복귀과), 수용담당부서(보안과)의 장들의 의견을 듣고 특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03. 소장은 이틀 이상의 귀휴를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04. 전화보고를 조건으로 한 귀휴의 경우 귀휴자는 매일 1회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동행 귀휴의 경우는 전화보고 조건은 붙일 수 없다.
105. 수형자 분류심사에 있어서 신입심사는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 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달 까지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106. 부정기형의 정기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107.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고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거나 무기형의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108. 교정시설의 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09. 정기 재심사 시기는 2/6, 3/6, 4/6, % 총 4회이다.
110. 부정기 재심사 사유: 오(심사내용 오류), 뚜(뚜렷한 공로), 기(기능, 기사, 학사), 금(금고이상형 확정), 징(징벌 의결)
111. 수형생활 태도 점수와 작업점수 또는 교육성적 점수를 채점하는 경우 수는 전체인원 10퍼 초과x 우는 30퍼센트 초과x but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 수, 우 각각 1명 가능
112. 평정소득점수가 5점 이하인 경우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 할 수 있고 8점 이상이면 상향 조정 가능(정기 재심사 마지막 %의 경우에는 7정도 가능)
113. 재심사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단계 범위 조정이 원칙
114. 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or 교육 못받은 경우에는 3점 이내로 작업or 교육성적 부여 가능
115.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날 부터 하며, 이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116. 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 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7. 징역, 금고 확정으로 3개월 미만or 구류, ~~노역장유치자~~ - 분류심사X
118. 개방, 완화 처우급으로 작업성적 우수자의 경우, 1일 2시간 이내로 개인작업 가능
119. 수형자 가족or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2일간 작업 면제사유
120. 수형자 부모or 배우자의 기일 ~~자식의 기일~~ - 1일간 작업 면제사유
121.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제한 사유- 1. 15세 미만, 2. 해독 및 이해능력 부족, 3. 징벌대상 행위 혐의가 있어 조사중 or 징벌 집행중
122. 직업훈련 보류 사유: 징벌 대상 행위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123. 소년 수형자가 직업훈련 자격에서 떨어져도 선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 할 수 있다. but 15세 미만은 선정 불가
124. 경찰관서에서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수용자x)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125. 사형이 집행된 후 5분이 지나야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 수 있다.
126.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127. 수용자 자살, 자해, 질병시 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5일 이내로 보호실 수용 가능
128. 보호실 수용시 소장은 의무관 의견 고려 7일씩 연장 가능 3개월 초과x
129. 보호실 수용시 의무관은 수시로 수용자 건강상태 확인

130. 수용자 소란,손괴시 소장은 24시간 이내로 진정실 수용가능(의무관 의견 고려X)
131. 진정실 수용시 소장은 의무관 의견 고려 12시간씩 연장 가능 3일 초과x
132.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야 함
133. 엄중관리 대상자의 상담책임자 1명당 상담대상자는 10명 이내로 하고, 상담책임자는 수시로 개별상담을 하여야 한다.
13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한 수용자는 처벌한다.
135.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136.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를 방조한 수용자는 그 징벌대상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을 부과함이 원칙이나, 그 정황 고려하여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137.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138.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음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39. 둘 이상의 징벌대상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징벌 중 가장 중한 징벌의 1/2 까지 가중할 수 있다.
140.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또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외의 징벌의 장기 1/2 까지 가중할 수 있다.
141.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할 수 없다.
142.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143. 교도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정의 승인을 받아 징벌 실효시킬 수 있다.
144. 법에 저촉, 금지물품: 21일이상~30일 이하 금치(1/2 감경가능)
145. 자해, 작업거부: 10일이상~ 15일 이하 금치(감경X) or 2개월 작업장려금 삭감
146. 거짓: 16일이상~20일 이하 금치(1/2 감경가능) or 3개월 작업장려금 삭감
147. 징벌 실효기간
- a. 9일 이하: 1년/ 10일 이상~ 15일 이하: 1년 반
- b. 16일 이상~ 20일 이하: 2년/ 21일 이상~ 30일 이하: 2년반
148. 징벌 1호(경고), 2호(50시간 이내근로봉사), 3호(작업장려금삭감), 14호(금치)는 다른 징벌과 공동 부과할 수 없다.
149. 금치와 그 밖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금치를 먼저 집행한다.
150. 징벌 1호~3호는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될 시 징벌 집행이 계속되지 않음(나머지는 계속 됨)

151. 수용자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은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하며 10일 이내로 하나, 특필인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초과하지 않는 기간 연장 가능
152. 소장은 질병등 사유로 징벌집행 일시정지한 경우 정지사유 해소되었을 시 지체없이 징벌 집행 재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정지한 다음날부터 집행을 재개한 전날까지 일수는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53. 징벌대상자의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154.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의 자가 행장 양호,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무기에 있어서 20년, 유기에 있어서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55. 가석방에 기간은 무기는 10년, 유기는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156.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157. 가석방 관련 사전조사 사항- 신원, 범죄, 보호
- 신원-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조사
  - 범죄-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조사
  - 보호- 형기 1/3이 지나기 전에 조사
158. 가석방 절차
- 교정시설: 분류처우 위원회 의결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 가석방 심사위원회: 가석방 적격여부 결정 - 결정 후 5일 이내 법장에게 가석방 허가신청(소년의 경우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담당)
  - 법장: 가석방 허가(재량)
  - 교정시설: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 가석방 실시(석방일시 지정의 경우 그일시)
159. 가석방자는 가석방 후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60. 사회봉사,수강명령: 10일내/ 보호관찰소장/ 대통령령관련 사항/ 신고
161. 전자장치피부착자: 10일내/ 보호관찰소장/ 서면신고
162. 가석방자: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 서면신고
163.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내,국외 여행시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64.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 품행, 직업종류, 생활정도 등 그밖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 작성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교정시설 장에게 통보  
but 변동사항 없으면 X

165. 가석방자 사망시: 관할경찰서장이 관할 지방검찰청장+ 교정시설 장에게 통보, 통보받은 교정시설장이 법쥬에게 보고
166. 가석방취소자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원래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취소 or실효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날부터로 한다.
167. 형기 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168. 사면, 가석방,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후 12시간 이내에 한다. 다만 그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
169. 보석, 구석취소, 불기소, 형의 집행정지, 구속집행 정지등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해야 한다.
170.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71. 소장은 수형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172. 민영교도소관련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1/3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73.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계약 기간은 수탁자가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밖의 경우는 1년이상 5년이하로 하되, 그 기간은 갱신 가능
174. 외부위원: 귀휴-2이상/ 분류-X/ 징벌-3이상/ 교정자문- 여성4이상/ 취.지.협-10이상
175. 보호장비중 보호의자 사용시 휴식 시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사용 못하고 그이후 4시간 지나야 다시 사용 가능
176. 영치품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1개월 범위 한정하여 수용자는 소장에게 영치품 보관 신청 가능
177. 주기적 횡수
- 소장은 교도관 시켜서 매일 2회 수용자 인원점검, 매일 수형자 작업실적 확인
  - 매주1회이상 - 교도관회의, 목욕, 금지처분시 실외운동처분, 당직간부 비상소집망 확인
  - 소화기 점검, 화재관련 교육은 매달 1회이상
  - 저수조등 급수시설 소독, 청소 6개월에 1회이상
  - 1개월- 소장 급식에서 주식확보 1개월분확보, 법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
  - 계호상 독거수용, 19세미만, 노인 수용자 건강검진 6개월에 1회이상(임산부는 정기적)
  - 법무부장관 교정시설 순회 1년에 1회이상(순회공무원 시켜도됨)

